

## 오산시 행정전화 교환원 복무 규정

제정 1989년 1월 1일 훈령 제 27호

개정 1997년 3월 13일 훈령 제110호

개정 1998년 11월 18일 훈령 제129호

(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때  
오산시보고통제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칙)

개정 2002년 5월 23일 훈령 제163호

(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때  
오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)

개정 2008년 10월 6일 훈령 제205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시본청 행정전화 교환원(이하 “교환원”이라 한다) 및 행정전화 통신기술원(이하 “통신기술원”이라 한다)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복무)** 교환원 및 통신기술원의 복무는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출퇴근)** 근무시간은 「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3조의 규정시간보다 20분전에 출근하고, 퇴근 시에는 20분 연장근무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의 지시에 따라 변경 근무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0. 6]

**제4조(교대)** 교환원은 제3조 근무시간 내에 상호 교대하여 근무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 10. 6>

**제5조(위치)** 교환원은 복무 중에 잠시라도 정한 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.

<개정 2008. 10. 6>

**제6조(보안)** 교환원은 다른 사람의 전화를 양해 없이 듣거나 복무 중 들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08. 10. 6]

**제7조** 교환원은 친절과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
**제8조** 긴급을 요하는 전화는 다른 전화의 통화중이더라도 중단하고 교환할

## 오산시 행정전화 교환원 복무 규정

수 있다.

**제9조** 교환실에는 특별한 용무가 없는 한 관계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

**제10조** 교환은 항상 전화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통신담당 또는 통신기술원에 연락하여 보수 조치하게 한다. <개정 98. 11. 18, 2002. 5. 23, 2008. 10. 6>

**제11조** 삭제 <2008. 10. 6>

**제12조** 교환원은 퇴근 시에는 반드시 당직원에게 교환업무를 완전 인계 조치하고 퇴근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0. 6>

### 부칙

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1997. 3. 13 훈령 제110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1998. 11. 18 훈령 제129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2. 5. 23 훈령 제16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8. 10. 6 훈령 제205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